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346
----------	-----

2023. 12. 1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30. / 김지훈(민) 의원 등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2. 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폐지, 이동 등 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확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안 제3조)
 - 신설: 시민시장담당관
 - 명칭변경: 종합민원담당관(→민원담당관), 산업경제국(→재정경제국)
 - 폐지 및 기능이관
: 평생학습원(→문화교육국), 미래전략관(→기획조정실, 미래도시추진단)
법무담당관(→기획조정실)
 - 위원회 변경: 시민안전관(도시교통위원회→자치행정위원회),
문화교육국(복지환경위원회→자치행정위원회)

-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안 제3조)
 - 신설 및 기능이관: 공원녹지관리사업소
-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안 제3조)
 - 신설: 미래도시추진단
 - 명칭변경: 도시관리사업소(→도로관리사업소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봉규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남양주시의 공정한 인사 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수정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346
----------	-----

2023. 12. 1.
운영위원회

1. 수정이유

가. 「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폐지, 이동 등 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안 제3조)

- 신설: 시민시장담당관
- 명칭변경: 종합민원담당관(→민원담당관), 산업경제국(→재정경제국)
- 폐지 및 기능이관
: 평생학습원(→문화교육국), 미래전략관(→기획조정실, 미래도시추진단)
법무담당관(→기획조정실)
- 위원회 변경: 시민안전관(도시교통위원회→자치행정위원회),
문화교육국(복지환경위원회→자치행정위원회)

나.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안 제3조)

- 신설 및 기능이관: 공원녹지관리사업소

다.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안 제3조)

- 신설: 미래도시추진단

- 명칭변경: 도시관리사업소(→도로관리사업소)

라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

제3조제2항제2호가목 “시민시장담당관, 홍보담당관, 감사관, 민원담당관”을 “시민시장담당관, 홍보담당관, 감사관, 민원담당관, 시민안전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“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,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“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가목을 삭제하고,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,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“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으로 신설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상하수도관리센터, 도로관리사업소,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미래도시추진단”을 “상하수도관리센터, 도로관리사업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 무와 소관) ① (생 략) ②상임위원회의 소관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 무와 소관) ① (현행 과 같음) ②-----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 무와 소관) ① (현행 과 같음) ②-----

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
2. 자치행정위원회

가. 미래전략관, 종합민원담당관, 홍보기획관, 법무담당관,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(생략)

다. 산업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<신설>

라. 평생학습원, 읍(출장소를 포함한다)·면·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마. (생략)

3. 복지환경위원회

가. (생략)

나. 문화교육국 소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시민시장담당관, 홍보담당관, 감사관, 민원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재정경제국 -----

라. 읍 -----

마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시민시장담당관, 홍보담당관, 감사관, 민원담당관, 시민안전관 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재정경제국 -----

라.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마. 읍 -----

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

3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환경국 -----

관에 속하는 사항

다.·라. (생략)

마. (생략)

4. 도시교통위원회

가. 시민안전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·다. (생략)

<신설>

라.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관리센터 및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4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
상하수도관리센터, 도로관리사업소,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미래도시추진단

나.·다. (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)

마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<삭제>

가.·나. (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)

다. 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라. -----

----- 도로관리사업소 -----
